

## ◎ 실비보상규정

제정 2012. 1. 17.  
개정 2016. 12. 27.  
개정 2018. 3. 22.  
개정 2023. 2. 17.

**제 1 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의 사업추진과 직장교육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, 외부 강사 등(이하 “임원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2. 17.>

**제 2 조(적용범위)** 임원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23. 2. 17.>

**제 3 조(수당 등)** 본회의 소속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임원 등이 의안 심의에 참여하거나 본회의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2. 17.>

1. 규약에 의한 이사회 임원 및 대의원총회 대의원 <개정 2023. 2. 17.>
2. 본회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참가위원
3. 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각종 회의 및 심사 등 참석자 <개정 2023. 2. 17.>
4. 직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초청된 강사 <개정 2023. 2. 17.>

**제 4 조(여비)** ① 임원 등이 본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 갈 경우에는 본회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2. 17.>

1. <삭제 2023. 2. 17.>
2. <삭제 2023. 2. 17.>
3. <삭제 2023. 2. 17.>

### 부 칙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 2 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(2016. 12. 27.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 2 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8. 3. 22.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 2 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3. 2. 17.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 2 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 <개정 2016. 12. 27, 2018. 3. 22, 2023. 2. 17.>

실비보상기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 급 액       |
|---|-------------|
| 1. 회계검사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회 300,000원 |
| 2. 직원채용 서류심사 및 면접수당                     | 1일 250,000원 |
| 3.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개최 시 참석수당<br>(서면결의 시 제외) | 1일 100,000원 |
| 4. 인사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참석 수당                  | 1일 100,000원 |
| 5. 사업관련 회의 참석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50,000원  |

※ 2항의 경우 참석시간이 2시간 미만 시 100,000원

※ 4, 5항의 위원회 참석 시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0,000원 추가(1일 1회)

[별표 2] <개정 2016. 12. 27, 2023. 2. 17.>

초청강사로 지급기준

| 구 분   | 지 급 대 상   | 단 가<br>(시간당)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특별(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·현직 장·차관(급), 전·현직 대학총장(급), 전·현직 국회의원</li> <li>대기업체 대표</li> <li>광역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</li> <li>국내외 해당분야에 저명인사로 사무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</li> </ul>  | 1회<br>500,000원<br>~<br>1,000,000원 |  |
| 특별(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영기업체장</li> <li>정부출연 연구기관장</li> <li>대학학장</li> <li>기초단체장 및 의회의장</li> <li>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사무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</li> </ul>  | 기본료 : 200,000원<br>초 과 : 150,000원  |  |
| 일반(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</li> <li>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 및 중역</li> <li>판·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회계사, 감정평가사, 의사</li> <li>산업훈련기관 대표</li> <li>연구소 연구위원(5년 이상 경력자)</li> <li>시도의회 의원</li> <li>기타 특수과목 전문가로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/ul> | 기본료 : 150,000원<br>초 과 : 100,000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본료: 1시간 미만</li> <li>초과: 기본 1시간 초과 시 시간 당 단가</li> </ul> |
| 일반(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</li> <li>산업훈련기관 강사</li> <li>연구소 연구위원 (5년 미만 경력자)</li> <li>기업, 기관·단체의 직원</li> <li>중앙부처 및 타시도 공무원</li> <li>특별강사와 일반강사 (가), (다) 제외</li> </ul>   | 기본료 : 100,000원<br>초 과 : 70,000원   |  |
| 일반(다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상북도 및 시군 공무원</li> <li>대학교 시간강사 및 대학 전임·시간강사</li> <li>외국어, 전산 등 학원 강사</li> <li>체육 및 레크레이션 강사 등</li> </ul>  | 기본료 : 70,000원<br>초 과 : 50,000원    |  |